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한국보험금융(주)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6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설계사	업무정지 90일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및 과태료 980만원 부과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)

- 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- 한국보험금융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. 5. 28.~2021. 7. 29.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㉠생명보험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2.6백만원)을 신한금융플러스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10.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8호